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한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90
----------	------

발의연월일 : 2024. 7. 2.

발의자 : 김한규 · 정준호 · 이성윤
황운하 · 김종민 · 위성곤
김용민 · 장철민 · 한준호
서미화 · 이기현 · 김태년
의원(12인)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 및 국제정세 불안으로 농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 농업인의 경영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음. 농업인의 농산물 등의 판매 수입은 줄어든 반면 농업에 사용되는 농약 · 비료 · 전기 · 유류 등 필수농자재에 지출되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농업기계 구입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에 그치고 있어 농업소득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음.

농업소득은 농가의 경영위기 방지, 귀농을 통한 농업종사자 유입, 청년농 육성 등 농촌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안전망과도 같다고 할 수 있으나, 농가의 경영비 상승은 소득 저하로 이어져 2022년 농가 소득은 평균 4,625만원으로 전년 대비 3.4% 감소하였으나, 농가 소득 중 농업소득은 949만원으로 전년대비 26.8%나 감소하였음.

이에 정부가 필요한 경우 필수농자재 및 일부 농업기계 구입비를

지원해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경영과 농업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과 농업 재생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구입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 또는 농업기계의 가격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구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 라. 재정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필수농자재의 품목, 지원액 등은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재정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농업기계의 종류, 지원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 마. 필수농자재 품목, 지원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 바.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급신청과 이의신청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경영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구입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경영체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법률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변화와 국제 농자재시장의 공급망 위기 등으로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 필수농자재와 농업기계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과 농업 재생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영농자재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6조에 따른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품목의 농자재를 말한다.
3. “농업기계”란 농축산물의 생산 등에 사용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수농자재 또는 농업기계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 경우 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구입비 지원에 관

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 또는 농업기계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농어업경영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를 말한다)에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구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필수농자재의 품목, 지원액 등은 제6조에 따른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농업기계의 종류, 지원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① 필수농자재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를 둔다.

1. 필수농자재 품목
 2. 필수농자재의 지원액, 지원한도
 3.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지급신청) 필수농자재 구입비와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구입비(이하 “농업기계 구입비”라 한다)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구입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구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경영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9조(환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경영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구입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중복지원 제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경영체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법률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구입비 지원금을 수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